

배포 일시	2023. 2. 9.(목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 김병철 (044-201-352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·관 협의체 6차 회의 개최 - 지난 5차례 회의에서 제시된 과제 종합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·관 협의체의 6차 회의를 9일 개최하였다.
  - 이월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건설 관련 협회, 연구원, 노무사,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.
-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민·관 협의체에서 제시되었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중점 논의하였다.
  -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,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레비 강요,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, 건설기계를 활용한 공사방해 행위 등이다.
-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으며, 2월 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
- 아울러,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‘건설현장의 특수한 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’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.

- 먼저, 참석자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.
  - 건설현장과 여건이 유사한 ‘플랜트 건설’ 분야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‘유급 근로시간면제’ 요구, 일 안하고 급여만 지급받는 팀장,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레비 강요 등이 없으며,
  -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등도 일부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, 건설 현장과 비교할 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전하였다.
- 쟁의행위 시에도 재적 조합원 수, 찬성 조합원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조합과 달리,
  - ‘플랜트 건설’ 분야 노동조합은 이를 명확하게 공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전하였다.
- 또한, 건설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아니며,
  - 일부 노동조합에서만 유독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.

□ 한편, 이원재 1차관은 2월 10일 오후 5개 권역별 불법행위 대응센터\*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.

\* 서울·원주·대전·익산·부산 지방국토관리청

- 이번 점검을 통해 지난달 구성된 5개 권역별 대응센터(전담팀)의 현장 점검 실적과 조치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.

\* 55개 현장 확인결과 14건 피해사실 확인 → 자료보강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예정

□ 이원재 1차관은 “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” 라며

- “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 고 밝혔다.